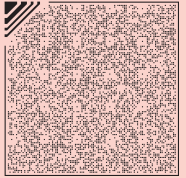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정책토론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통해 본 국내장애인 권리 이행방안 살펴보기

일시 2023. 6. 27. (화) 14:00 ~ 16: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2호+213호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사)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정책토론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통해 본 국내장애인 권리 이행방안 살펴보기

Contents

01. 주제발표	05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최종견해와 국내 이행 (정혜란)	
02. 토론1	21
- 장애와 젠더 관점으로 차별을 드러내고 권리를 재구성하기 (이진희)	
03. 토론2	31
-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법률대응을 통해 본 장애인권리협약 “사법접근법을 중심으로” (이소아)	
04. 토론3	45
- 〈UN CRPD〉의 장애인 노동 권고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창조)	
05. 토론4	57
- 대한민국! 차별+학대+가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것만은 지키자! (박찬동)	

■ 토론회 진행 순서

- 사 회 : 배 현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정책위원)
- 좌 장 : 김미숙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사무국장)

시 간	내 용
14:00 -14:10	<p>【개회 및 축사】</p> <p>이순화 상임대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완욱 센터장(광주장애인인권센터)</p>
14:10 -14:40	<p>【주제발표】</p> <p>“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최종견해와 국내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 해 란 활동가 한국장애포럼
14:40 -14:55	<p>【토론1】 제6조 장애여성, 제7조 장애아동, 제23조 가정</p> <p>“장애와 젠더 관점으로 차별을 드러내고 권리를 재구성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진희 공동대표 장애여성공감
14:55 -15:10	<p>【토론2】 제10조 생명, 제13조 사법, 제14조 신체적자유, 제17조 존엄성</p> <p>“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법률대응을 통해 본 장애인권리협약 - 사법 접근법을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소아 변호사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15:10 -15:25	<p>【토론3】 제27조 노동, 고용</p> <p>“ <UN CRPD>의 장애인 노동 권고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창조 연구활동가 노들장애학궁리소
15:25 -15:40	<p>【토론4】 제16조 착취 및 학대, 제26조 가할 및 재활, 제28조 적절한 생활 및 사회적 보호</p> <p>“대한민국! 차별+학대+가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것만은 지키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찬동 관장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15:40 -16:0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정책토론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통해 본
국내장애인 권리 이행방안 살펴보기

주제발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최종견해와 국내 이행

정혜란 활동가
(한국장애포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최종견해와 국내이행

한국장애포럼(KDF) 정혜란

목차

1. 최종견해 발표 배경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한국 비준 현황
- 대한민국 정부 2, 3차 심의대응 과정

2. 2, 3차 최종견해 발표와 이후 대응

- 주요 최종견해 (탈시설, 생명, 이동, 노동, 교육 등)
- 발표 이후 대응: 기자회견(선택의정서) 및 지표개발 등

3. 기타_부속문서 소개(탈시설가이드라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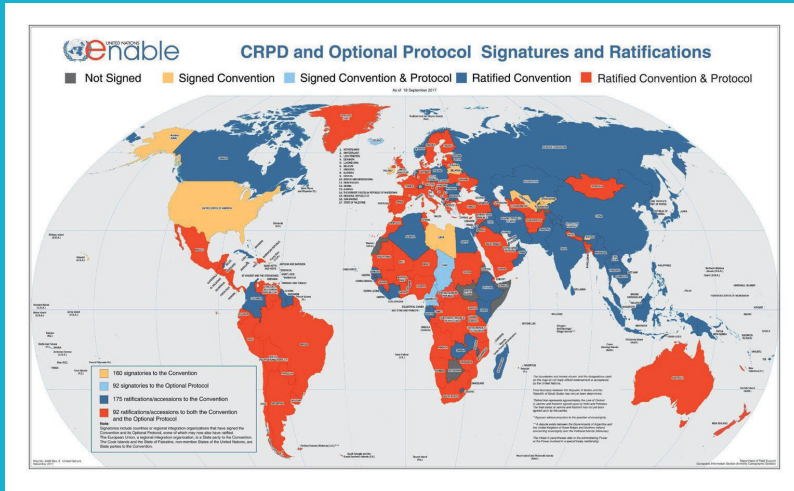
1. 최종견해 발표 배경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장애인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약속”

비준 현황 (2022.5.6.기준) 186개 국/선택의정서:100개 국



대한민국 헌법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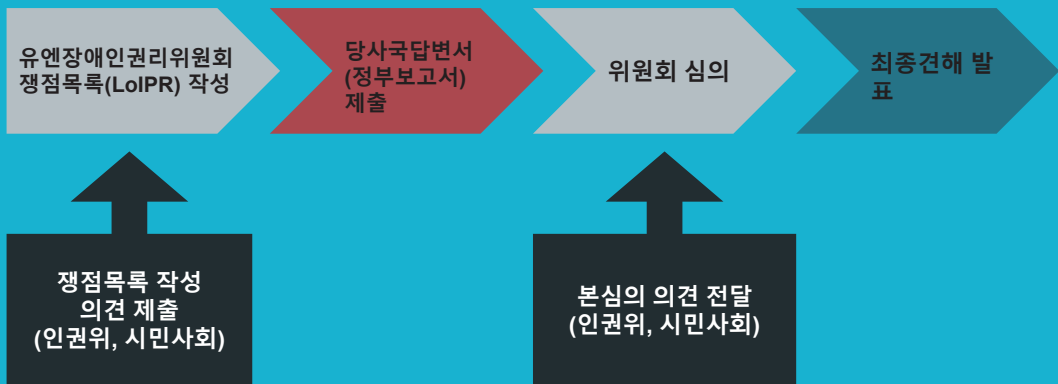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국 현황

- 협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 과정
 - 협약: 2007년 3월 서명 -> 2008년 12월 비준 -> 2009년 1월 발효
 - 선택의정서: 2022년 12월 비준 -> 2023년 1월 발효

- 심의 진행 과정
 - 1차 정부 보고서 제출(2011년) → 2014년 심의 → 1차 최종견해
 - 2, 3차 병합 정부보고서 제출(2019년) → 2022년 심의 → ‘2, 3차 최종견해’
 - 4, 5, 6차 병합 정부 보고서 제출(2031년) 예정

심의 메커니즘 (2014년부터 간소화)





민간보고서 작성



프라이빗 브리핑
준비



프라이빗 브리핑



한국정부 심의



위원 로비

2. 최종견해 발표와 이후 대응

2, 3차 최종견해-노동권

56. (b)최저임금법을 검토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에서 배제된 장애인에게 보상을 제공할 것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못 받아도 되는 대표적인 차별조항'최저임금법 7조'를 폐지하고,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임금 지원 등 적극적 노동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2, 3차 최종견해-생명권

22. (a) 자폐성장장애인과 심리사회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하며, 장애인의 장애인단체를 통한 긴밀한 협의와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한 장애인 국가 자살 및 실종 예방 전략 채택하고 이행할 것;

“자살은 자폐성장장애인 사망원인 1위는, 정신장애인 사망원인 4위입니다. 이러한 비극적 수치는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조사 및 정책이 텅 비어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이미 주목하며, 한국 정부에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자살 예방 전략 채택을 권고했습니다.”

2, 3차 최종견해-교육

50.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1차 최종견해)를 반복하고 당사자에 촉구한다.
 (a)교육 요구 사항 및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별화 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교육을 포용하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및 비 교육 인력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

“장애인 통합교육에 관해 2014년의 권고를 또다시 받았습니다. 즉, 10년이 다 되도록 장애인 통합교육 분야는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죠. 장애인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 및 통합교육 평가는 ‘학습 수준’이 아니라 장애학생의 ‘인권’, 즉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3차 최종견해-긴급탈시설

22. (b)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과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보장받고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및 독립 모니터링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 긴급 탈시설을 발동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6. (b) 긴급상황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이들의 지역사회 생활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무려 두 차례에 걸쳐 긴급탈시설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보호’라는 명분하에 코호트 격리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의 문을 열고, 긴급탈시설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3차 최종견해-탈시설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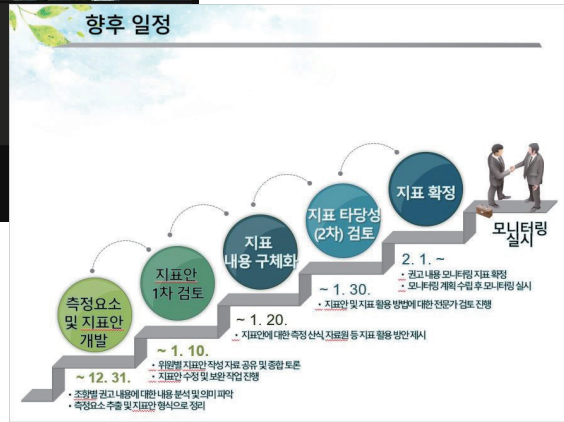
42.(a)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하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계획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원칙을 포함 할 것;

*“시설 유지와 역할을 인정하는 기만적 탈시설 로드맵은 이제 그만 시설 수용 그 자체를 인권침해로 명시하고 있는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설 폐쇄, 구체적 예산안 수립 등 현재의 로드맵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 3차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연대



탈시설가이드라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설은 정당화될 수 없다”

8.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협약 제19조 이행은 공공 보건 긴급상황을 포함한 위기상황에서도 중단 될 수 없다.

9. 시설수용을 지속하는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국은 지역사회 지원과 서비스의 부족, 빈곤, 낙인을 시설 유지나 폐쇄 지연 정당화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탈시설가이드라인

“조금의 시설적 요소가 있다면 시설로 간주한다”

16. 민간이 운영하고 통제하는 곳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탈시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타인과 지원을 공유해야 하거나, ‘지역사회에’ 위치하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일상을 결정하고 자율성이 거부되는 환경이거나, 혹은 한 서비스 제공자가 주거와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주거형태 등이 있다.

28. 채택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 지원서비스와 활동지원의 정의는 새로운 형태의 분리 서비스 출현을 방지해야 한다. ‘소규모 그룹홈’을 포함한 단체 주거, 보호작업장,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전환홈(체험홈), 주간보호 센터(Day-care centres) 혹은 지역사회 치료 명령과 같은 강제 조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아니다.

탈시설가이드라인

“시설로 가는 모든 예산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30. 당사국은 시설의 신규 설립 및 개보수에 공공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국제협력 예산을 포함한 예산을 포괄적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과 포괄적 주류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정해야 한다.

63. 기존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당사국은 현재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확인하고 이를 장애인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재할당해야 한다.

70. 당사국은 동료지원, 자기옹호, 지원집단과 기타 지원 네트워크(장애인 단체, 특히 시설화 생존자 단체)와 자립생활을 위한 센터에 투자해야 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지원 네트워크 개발을 장려하고 인권, 옹호, 위기지원 교육 설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자금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탈시설가이드라인

“시설 거주자가 아닌 시설 수용 생존자”

118. 보상 메커니즘은 장애인 시설수용으로 인한 모든 형태의 인권 침해를 인정해야 한다. 보상과 배상은 지속적인, 결과적, 교차적 위해를 포함하여 시설수용 중, 탈시설 후에 입은 인권침해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19. 당사국은 시설수용을 경험한 장애인을 대표하는 모든 단체와 협상하고, 시설수용 생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생존자의 사회 내 지위를 증진하기 위한 추가적 교육, 역사 및 기타 문화적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국은 시설수용의 결과로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 및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시설 수용 생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재정 보상은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형태의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훼손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한국장애포럼 정혜란
hrjeong@thekdf.org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정책토론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통해 본 국내장애인 권리 이행방안 살펴보기

토론 1

〈제6조 장애여성, 제7조 장애아동, 제23조 가정〉

장애와 젠더 관점으로 차별을 드러내고 권리를 재구성하기

이진희 공동대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젠더 관점으로 차별을 드러내고 권리를 재구성하기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Contents

목차

／ 젠더관점 없는,
정책과 제도
위협받는 성평등 정책 01

／ 성과재생산
권리보장의 공백 03

／ 보호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장애아동 02

／ 차별을 드러내고
권리를 재구성하기 04



장애여성(제6조)

- 1 /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 최종건해
-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주류화하고, 성인지 관점을 장애정책과 프로그램에 주류화
 -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고 성별 관점과 교차성을 반영하는 특정 법률 및 전략 채택

- 2 /
- 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개선 사항 제시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사업 집행을 향상을 위한 방향 / 출산비용 지원단가 인상 / 지역장애인보건 의료센터 모성보건사업과 연계 등
 -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8)



젠더관점 없는, 정책과 제도 위협받는 성평등 정책

- 3 / 2.3차 정부보고서
- 여성 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주요과제로 추진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과 출산비용 지원을 운영
 - 출산시 출산비용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여성의 경우 10만원 추가 지급
 - 성폭력 상담소(22개소) 및 가정피해상담소(4개소) 운영. 폭력피해자 보호시설(8개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2개소)
 - 2015년부터 장애아동 청소년성인권 교육의 전국적 확대

=>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지원 정책.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교차차별을 분석하거나 반영하는 정책 없음. 장애, 젠더를 교차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

=> 젠더 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이 지역사회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원정책 부재(쉼터 등 제한된 집단 거주시설 이외의 대안 부재) 여성가족부폐지 논의 등 젠더관점이 부재한 인식속에 장애여성 정책은 시혜적이고 단회기성에 그친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정상가족을
벗어난
장애여성을
상상하지 않는
사회

트랜스젠더 장애여성 돌봄의 권리는?

=> 화장, 치마 착용 등 자신의 성별을 드러내는 신변지원을 거절당한 중증지체장애여성. 경험하는 차별과 혐오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의 부재와 실질적인 돌봄이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로 인한 중단된 경험을 가지고 있음. 스스로의 정체성을 숨겨야만 돌봄이 가능.

고용장려금 10만원 증액? 생산성 중심의 노동현장속 장애여성

=> 장애남성의 고용률 77.8% 장애여성의 고용률 22.2%
평균소득 118.9만원, 고용형태 78.5%가 비정규직
전체인구 무학비율 3.5%, 장애여성의 무학비율 19.1%
전체인구 대학진학률 41.7% 장애여성 9.0%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 (7년을 일하는데) 나는 계속 청소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일은 내가 잘못하니까 할 수 없어요. (참여자 A), 시끄럽게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싸우면 화해해야 돼요. (참여자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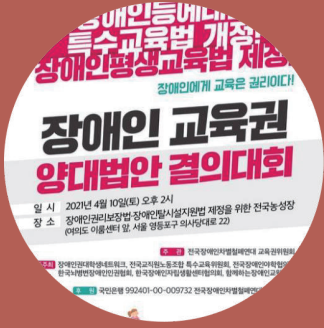
(2020년 발달장애여성 노동경험 인터뷰_장애여성공감)



장애아동(제7조)

- 1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 최종권해
- 장애아동이 모든 문제에 대해 견해를 구성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애아동의 발달하는 능력을 존중하는 메커니즘을 수립
-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정책을 이행.

- 2 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장애아동수당인상, 저소득 장애아동 등 취약장애인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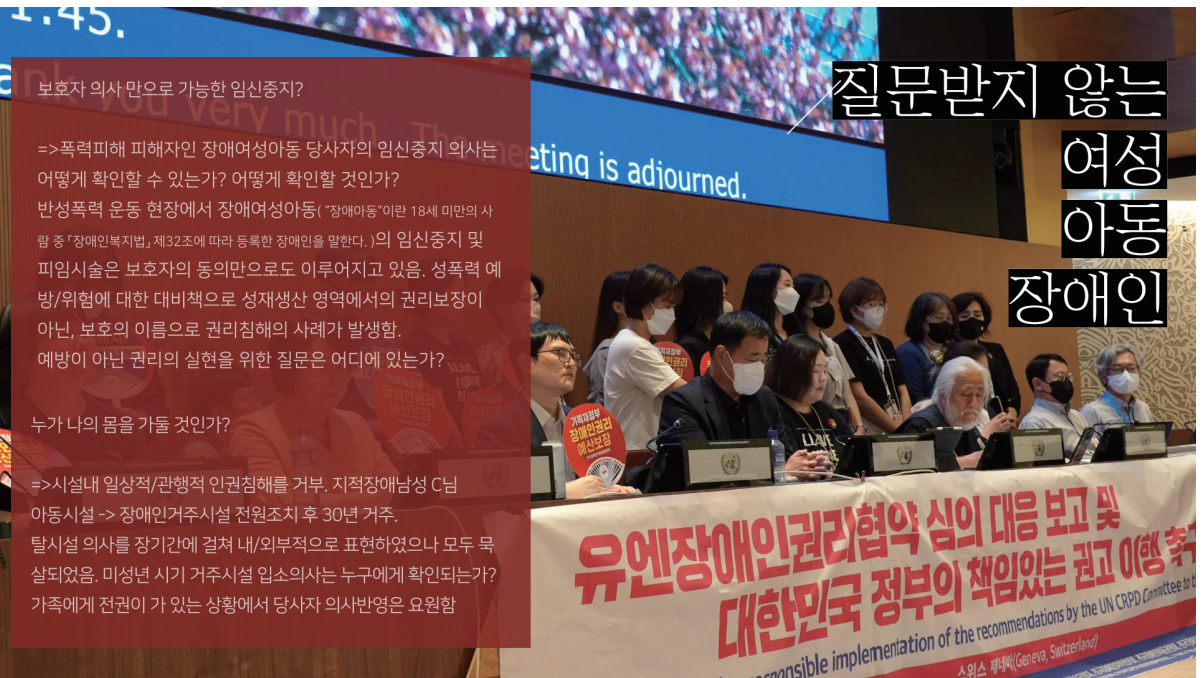
보호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장애아동 정책

3

2.3차 정부보고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2012년 8월 5일에 제정
-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5월 20일 제정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을 개선하여 민간자격자에서 교과목 이수로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에 기여

=> 장애와 아동 청소년 인권의 교차적 관점과 정책의 부재
재활과 치료 중심의 사회서비스에 방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주로 민간에 의해 운영



보호자 의사만으로 가능한 임신중지?
=> 폭력피해 피해자인 장애여성아동 당사자의 임신중지 의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반성폭력 운동 현장에서 장애여성아동(“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의 임신중지 및 피임시술은 보호자의 동의만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음. 성폭력 예방/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성재생산 영역에서의 권리보장이 아닌, 보호의 이름으로 권리침해의 사례가 발생함.
예방이 아닌 권리의 실현을 위한 질문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나의 몸을 가둘 것인가?
=> 시설내 일상적/관행적 인권침해를 거부. 지적장애남성 C님 아동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전원조치 후 30년 거주. 탈시설 의사를 장기간에 걸쳐 내/외부적으로 표현하였으나 모두 묵살되었음. 미성년 시기 거주시설 입소시사는 누구에게 확인되는가? 가족에게 전권이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의사반영은 요원함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23조)

- 1 /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 최종권해
 - 장애여성 등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의 책임을 다할 권리를 인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
 - 장애인 가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을 채택할 것

- 2 / 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 개선 사항 제시: 장애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권리성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14조 삭제 추진(20.11, 정부안 국회 제출) => 3년이 지난 지금도 입법이 요원함.



성과재생산 권리보장의 공백

- 3 / 2.3차 정부보고서
 -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 운동)를 제공
 - 「민법」 제807조와 제856조에서는 결혼 및 가족구성(입양의 요건)에 관한 조항
 -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 비용 지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등)에 근거하여 산전·산후조리 도움 지원사업등의 지원을 통해 장애여성의 임신·출산과정을 지원

- =>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권리와 지원정책을 해당 조항의 지원정책으로 재설정하고 있음.
- 한시적인 바우처와 치유 중심의 바우처 정책 이외 연애, 임신, 출산,양육 등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권리의 모든 영역이 부재함.

위험을 강조하는 성교육, '정상성'을 강제하는 사회

=> 위험한 연애, 금지된 섹스. 장애 당사자의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욕망과 욕구를 위험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음. 장애 당사자의 연애와 성적 권리는 사건속 피/가해자로만 재현되고 있음.

- 2022.11.09 교육부의 2022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성평등'을 삭제하고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보장'을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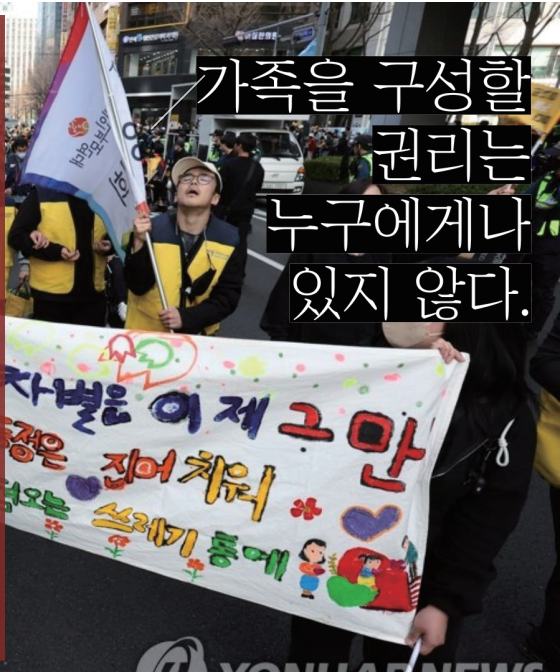
- 2022.03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한다는 사유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폐기 의견

-서울시 교육청 동성애 옹호한다는 '성평등강의 취소' 사건

낙태죄 폐지 이후로도 유효한 모자보건법 제14조
성과 재생산권리보장 법/제도의 공백

=> 우생학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출산에 대한 낙인을 찍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삭제되지 않음. 20.11월 정부안이 국회 제출되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삭제되지 않고 있음.

=> 미프진 도입의 자진철회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1년 5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현 대약품은 식약처가 요구하는 보완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였음. 식약처는 이것은 인간의 영역임을 이유로 방기하고 있음.



1/성평등 정책이 반차별 정책이다

- 성평등 관점은 장애여성 정책에서만 부재하지 않음. 장애여성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는 여성 및 소수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되기 어려움

- 장애, 젠더, 인종, 성별정체성, 나이 등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장애여성의 권리실현을 오직 '출산하는 여성'의 몸에 맞춰 제한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장애인정책에서도 여성정책에서도 '장애여성' 정책은 고려되지 않음



2 포괄적 차별금지, 보편적 평등의 원칙

장애여성-장애아동-비혼/기혼 장애인들의 권리박탈 경험은 이어져 있음.

*보호/돌봄받아야 하는 존재 - 당사자의 욕구 및 의사 확인 불인정 - 동의받지 않은 임신중지 및 피임시술 - 지역사회 독립 인프라 미비 - 원가족내 권력 약화 - 성/가정폭력 젠더기반 폭력의 골레

교차성의 정치는, 교차의 영역에서 배제되어온 소수자들의 경험을 경청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학을 통해 시작 될 수 있음([교차성x페미니즘, 여이연, 1998, 80p])

장애여성은 장애인 안에 차이를 드러내며 교차적 정체성과 복합차별을 드러내는 운동을 해왔음.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 수립 속에서 장애여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마련되어야 함



장애여성공감

감사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정책토론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통해 본 국내장애인 권리 이행방안 살펴보기

토론 2

〈제10조 생명, 제13조 사법, 제14조 신체적자유, 제17조 존엄성〉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법률대응을
통해 본 장애인권리협약
“사법접근법을 중심으로”**

이 소 아 변호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통해 본 장애인 권리 이행 방안

- 제10조 생명, 제13조 사법, 제14조 신체적 자유, 제17조 존엄성

이소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1. 관련 협약과 권고

위 조항들을 어떻게 엮어서 말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아는 것, 겪었던 것, 느꼈던 것들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장애인권리협약의 위 조문들과 관련 권고를 나열해보겠습니다.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대한 접근(제 13 조)

29. 위원회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재판에 완전히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한이 계속 존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30. 위원회는 이진 권고를 참조하고, '2020 년에 준비된 장애인의 사법 접근에 관한 국제 원칙 및 지침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목표 16.3 을 상기하고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합니다.

(a)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사법적 접근에 관한 행동 계획과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모든 제한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및 사법적 조치를 채택합니다. 사법 절차;

(b) 장애인이 법적 절차의 다양한 측면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별화된 지원 제공을 포함하여 절차를 조정합니다.

(c)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점자, 수화, 쉬운 읽기, 오디오 및 비디오 필사본과 같은 대체 및 보완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개발하고, 보편적인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고, 물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채택합니다. 접근 가능한 교통 수단을 포함하여 모든 사법 시설로

(d) 사법 및 법 집행 공무원에게 협약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쉬운 말

13조

법에 접근하기

“누구나 법에 접근하고, 법과 관련된 일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법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장애인권리협약에 맞는 법적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대한민국은 법과 관련된 절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지원을 해주세요.
- 대한민국은 법과 관련된 절차에서 점자, 수어, 쉬운 정보, 화면 해설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법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러 어딘가에 갈 때 건물에 편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대한민국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알도록 교육해 주세요.

2. 이 조항과 관련한 상황과 심정

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헌법불합치) 사건 관련 이야기¹⁾

뇌병변장애가 있는 A씨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동사무소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바꾸고(변경) 싶다고 찾아갔다. 담당 공무원은 주민번호를 물어보고 컴퓨터를 두드려보더니 신청서도 주지 않고 그저 안 된다고만 한다. 한국에는 행정절차법이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요구했다.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돌려보낸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지금 이대로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일단 신청서를 어떻게든

1) 이 이야기는 사건을 ‘당사자라면 어떻게 느꼈을까’라고 미루어 짐작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접수 시키고 한참 기다려 신청이 거부된 것을 확인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 사이 모든 것을 접고 기다려야만 하다니... 그냥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1년 후)

몇 년을 버텨보기로 큰 마음을 먹었다. 변호사를 어렵게 구했다. 소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2년 후)

아직 1심도 안 끝났다. 변호사말로는 언제 끝날지 변호사도 모른다고 한다. 그냥 요양원에 죽으러 들어가야 하는 걸까? 오른손도 완전히 쓸 수 없게 되었는데...

(3년 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제 곧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

(3년 2개월 후)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받았는데도 공무원이 서비스를 변경 안해준다. 그건 헌법소송이 끝난 거고 행정소송은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행정소송을 이겨도 그것이 법원에서 서비스를 변경하라고 곧바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어서,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게 말인가 막걸린가? 몇 년을 희롱당한 기분이다.

변호사가 뭐라고 법률용어로 말하는데 못알아듣겠다. 의무이행소송? 우리나라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어서 이런 웃기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

(3년 6개월 후)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나니 구청에서 방법을 들고 나왔다. 자기네 예산이 어찌고 복지부 예산이 어찌고 힘들다 어쩐다 하는 말을 계속한다. 왜 예산 가지고 생색을 내는가? 내가 구걸하러 온 것인가? 그런 사정을 왜 내가 함께 고민해줘야 한다는 말인가, 나의 어려움을 공무원인 너희들이 고민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비슷한 상황의 다른 C, D도 행정소송을 시작하려고 한다.

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먼저 신청부터 하고 거부처분부터 받아오라고 한다. 그런데 신청하러 갔더니 그냥 안된다고 돌려보낸다. 접수도 안 받고 접수증도 안 준다. 그래서 그냥 왔다. 변호사한테 그냥 돌아왔다고 하니, 변호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음엔 자기랑 같이 가잔다. 약속을 잡고 며칠 후 변호사랑 동사무소에 같이 갔다. 그랬더니 접수증을 그 자리에서 주고, 안되는 이유는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한다.

왜 변호사까지 가야지만 접수증을 받을 수 있는 걸까? 나는 시민이 아닌가? 왜 내가 한 말은 그냥 듣지 않는가?

나.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중단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이야기2)

발달장애가 있는 B씨는 계속 노동력을 착취 당하다가 60세 경 처음으로 옹호기관 활동가들을 통하여 구출 되었다. 이후 공공후견인도 선정되고 혼자사는 집도 구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법상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 정착이 가능했다. 그런데 B씨가 만65세가 되는 생일을 2개월 앞두고 두 서비스가 모두 종료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유는 그냥 65세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법률에 65세 미만이라고 신청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법률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자기들 내부 매뉴얼로 안된다고 한다.

옹호기관 활동가를 통해서 구청에 서비스 신청이 중단된다는 ‘처분’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당사자는 발달장애가 있으니 스스로 요청하기 어려우니 옹호기관에서 대신 요청했다. 그런데 처음엔 거부당했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고 나니 처음 복지서비스들을 신청하던 지난한 과정들 있었다. 스스로 요청하지 못하니 후견인을 선정해야 한다, 복지는 ‘신청’해야 된다고 그것도 ‘서명’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공무원들. 후견인이 선정되기까지 수개월동안 공무원들이 말하는 법적인 대리권이 없는 활동가들이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매번 자신들의 자격과 필요성을 증명해야 해서 얼마나..... 응색했던가.

그렇게 자격을 요구하던 공무원이 이번엔 ‘행정절차법’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의무-‘처분’을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는 나몰라라 한다.

한 장의 중단처분서를 받기 위해 활동가들은 몇날 몇일을 사방에 전화를 하며 동동거렸다.

겨우 서면으로 중단처분을 받고 일단 발달장애인중단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처분에 대해서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결정을 받은 구청이 꿈쩍을 안한다. 자기네들 예산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예산이라고. 보건복지부가 전산을 안열어줘서 안된다고. 광주광역시는 예산이 있어도 자기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발을 뺀다.

2) 이 이야기는 사건 대리인으로서 느낀 것을 적은 것입니다.

다. 위 사건들과 관련한 국내 법률들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③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1., 2012. 10. 22.>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나. 자폐성장아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

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

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6. 8.>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8.>

⑤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신설 2021. 6. 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 6. 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 생명권, 안전권,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시민으로서 살 권리/존엄과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

-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은 생명권, 안전권, 자기결정권,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시민으로서 살 권리, 이동권, 자유권 등 모든 것에 근본적인 제약을 받게 됨. 기본권의 상호의존성 속에 얼마나 많은 일상의 구체적인 지난함들이 숨어 있는가...

- 위에서 언급한 지난한 과정들 속에서 당사자와 그 곁을 구축하는 활동가들은 존엄을 침해 받음.

3. 사법접근권의 구조적 한계들

가. 신청주의와 의무이행소송의 부재

- 법률에서 애초에 신청자격을 제한하여 신청도 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경우, 거부처분을 받아야지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당사자들은 자신의 삶을 걸겠다는 경제적 사회적 시간적 기회비용을 감수해야지만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음. 그 법률이 문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없고,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다룰 수 있음.

- 행정소송 비용 자체가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이는 소송구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당사자들이 장애 관련한 사회복지 문제를 법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상의 엄격한 소송요건을 모두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중에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의무이행소송이 없고 그에 따른 임시 행정가처분 제도가 없다는 문제가 큼.

- 권이용호활동가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관계 공무원의 교육 등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

나. 동사무소 행정에 있어 하드웨어 이외에 소프트웨어적 접근권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경사로, 휠체어 이동,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등은 당연히. 그러나 이런 부분만 갖추면 해결되는 것일까

- 신청서, 신청절차, 처분통지서들을 쉽게 설명하는 의사소통보조도구 개발 이용 확대
- 무엇보다도 일단 국내법이라도 먼저 지켰으면...

다. 법원 안내문, 결정문, 판결문 - 쉬운 결정문 노력

- 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정책토론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통해 본 국내장애인 권리 이행방안 살펴보기

토론 3

〈제27조 노동, 고용〉

〈UN CRPD〉의 장애인 노동 권고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창조 연구활동가
(노들장애학궁리소)

<UN CRPD> 제27조 ‘장애인 노동 및 고용 권리’,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최종견해>의 한계, 그리고 ‘이미 이를 넘어선’ 한국 장애인 운동계의 대안

정창조(노들장애학궁리소)

1. 14년 <최종견해>=22년 <최종견해>=30년 <최종견해>?

- 지난 2014년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의 최종 견해>가 발표됨.
‘근로 및 고용’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4년 권고안 근로 및 고용(제27조)

49. 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이 “일할 능력이 명백하게 부족한 사람”을 최저임금의 혜택으로부터 배제하고, 일할 능력이 부족한 것을 정의하기 위한 평가와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일을 하는 많은 장애인들,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보상을 받는 것과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 작업장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한다.

50. 위원회는 당사국이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에 대한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장애인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 체계를 도입할 것과 보호 작업장을 지속하지 말 것을 권장하며, 본 협약의 내용에 따라 장애인 조직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한다.

51.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 할당제가 있음에도 장애인 실업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높으며, 특히 장애여성의 실업률이 높은 것을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당사국이 고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특히 장애여성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 분야에 대한 성과나 결과에 대한 통계를 출판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장애인 의무고용(51, 52)

- 이 권고안에 대해 정부는 “대한민국은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정, 부담금, 명단공표 등 제재 조치와 더불어,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지원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함.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의무고용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노동을 하는 장애인 노동자 비율은 전체 장애인 노동자의 20% 남짓에 그치고 있기에, 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심지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2020년 기준으로 한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는 37% 수준으로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상황임.¹⁾ 특히 2014년 <최종견해>에서는 “장애여성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지만, 고용장려금 차원에서 장애여성 고용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특별한 정부의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

-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적용제 도입 등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강화, 고용 저조 기업에 대한 이행지도 강화, 명단공표제도 개선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함. 그러나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적용제는 장애인운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전혀 시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심지어 장애인 의무고용 미고용 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최소 60%에서 최대 최저임금 100% 수준으로 사실상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음. 이는 대한민국에서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로만 책정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임(2021년, 100대 기업 중 66곳, 721개 공공기관 중 292개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는 각 기업 및 기관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에 비해 고용부담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임).

- 명단공표 기준 역시 여전히 취약하여 상당수 기업들, 심지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는 기업들마저 명단공표 기준을 살짝 넘는 수준으로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여 명단공표를 피해 가고 있는 상황임.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 최저임금(49, 50)

- 한국에는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제도’가 있으며, 정부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승인 기준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도리어 역대 최고치인 9,350명에 달했고, 비슷한 수의 노동자들이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을 수행함.
- 정부와 장애계 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편 TF에서 정부는 장애계의 ‘최저임금적용제외 전면 폐지’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음.
- 장애인 별도의 최저임금을 마련(감액제도)하자는 법안,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에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만 삭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적용제외를 승인하는 법안 등, 여전히 차별적인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나, 이 문제가 많은 법안조차 정부 및 국회는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음.
- 사실상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에 정부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적절함.

보호작업장(50)

-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분리노동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노동자들이 주로 노동을 하고 있는(최저임금적용제외 노동자 중 7,371명이 보호작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음) “보호작업장을 지양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보호작업장 폐지 및 대안 마련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왔고, 2015년 560개였던 보호작업장은 도리어 2020년 12월 기준 619개로 증가함.
- 결국 ‘장애인 노동권’ 분야에서 정부가 14년 <최종견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사항은 전무하다고 평가해도 무방함.

2022년 최종견해는?

- 이 탓에 2022년 발표된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2·3차 보고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내용은 2014년 <최종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음. 특히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보호작업장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권고가 제시된 상황.

○ 두 번째 최종견해 근로 및 고용 부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2년 권고안 근로 및 고용(제27조)

노동 및 고용 (제27조)

55.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a) 지적 그리고/또는 심리사회적장애인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차별적 법률.

(b) 「최저임금법」이 장애인을 최저임금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음.

(c)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계속적으로 분리된 채 있고, 장애인노동자들을 보호작업장에서 개방 노동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옮기려는 명확한 계획이 부재함.

56. 위원회는 장애인의 노동과 고용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22)를 상기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8.5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을 개방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 특히 채용 광고, 채용 절차, 정당한 편의 제공, 재훈련, 승진, 그 밖의 노동 및 고용과 관련한 권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

(b) 「최저임금법」을 재검토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에서 배제된 장애인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것.

(c) 장애인, 특히 탈시설 과정에 있는 장애인,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리사회적장애인이 개방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과 고용, 그리고 통합적 노동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d) 장애인이 보호작업장으로부터 개방되고 통합적이며 접근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장애여성의 개방노동시장 내 참여 증대를 위한 할당제를 특별히 포함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특화된 적극적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

- 2014년 <최종견해> 발표 이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을 2022년 <최종견해> 이후에는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임. 그러나
 - : 2022년 4월 20일에서야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의 전면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사실상 통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보호작업장 축소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보호작업장 대안 마련에도 현 정권은 전혀 의지가 없어 보임(표준사업장 전환 정책만 간혹 언급되지만, 보호작업장이 자발적으로 표준사업장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음).
 - : 이후 윤석열 정권의 장애인 정책의 시금석이 될 <제6차장애인종합계획> 역시 기존의 장애인 노동 정책 패러다임을 사실상 그대로 반복할 뿐이며, 22년 <최종견해>에서 권고한 사항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음.
 -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등이 장애인의무고용률 인상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기업에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향, 즉 고용부담금 대폭 인상 및 명단 공표제 기준 변경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 나아가 현 정권 및 여당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에 따라 탈시설 과정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 역시 위협을 받고있는 상황. 특히 중증장애인 및 ‘지적 그리고/또는 심리사회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보장 및 노동권 보장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는 사실상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결국 현 정권의 기초대로라면, 다음 2030년 <최종견해> 때도 한국 정부에는 유사한 권고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즉 22년 <최종견해> 역시 14년 <최종견해>처럼 유명무실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음.

2. 23년 <최종견해>의 한계와 ‘장애인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

- <UN CRPD>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고, 22년 <최종견해>의 내용, 특히 1. 최저임금적용제외 문제, 2. 보호작업장 등 분리노동 강화 철폐, 3. 탈시설 장애인 및 지적 그리고/또는 심리사회적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및 노동권 보장을 실질화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22년 <최종견해>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 장애인 노동 조건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상황으로 보임. 22년 <최종견해>는 물론이고 22

년 발표된 <일반논평8>의 내용 역시 <최종견해>의 다른 부문 내용들, 예컨대 탈시설이나 교육, 접근권 등등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함이 많은 것도 사실임. 이 내용만으로는 장애인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4년 이후 거의 변화되지 않은 장애인 노동 정책을 이후에도 한국이 반복할 여지를 남겨둠.

○ 22년 <최종견해>가 갖는 한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1. 2022년 발표된 일반논평8(General comment No. 8 (2022)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work and employment)은 물론이고, <22년 최종견해>에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이 반영되어 있음(이는 일반논평 8 개요 초안에 ‘법과 제도에서 노동능력평가 및 의료적 적합성 기준 삭제’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초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임).

: <일반논평8>은 “능력주의는 '보호 작업장'과 같은 분리 고용과 같은 법률, 정책 및 관행을 뒷받침하고 비공식 경제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평등 및 차별을 초래하는 의료 및 자선 장애 모델의 토대”라 비판하고 있음에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다시 말해 충분히 능력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념을 고수하고 있어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3호>(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General comment No. 23 (2016) on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rticle 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ara. 47 (c).)에는 “인지된 근로 능력 감소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동일 가치 노동’이 ‘동일한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22년 <최종견해>와 <일반논평8>은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은 한국 정부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정당화 근거로 지속 활용할 여지가 있기에 <UN CRPD>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2. <최종견해>는 ‘개방노동시장’으로의 ‘장애인 통합’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개방노동시장 영역에 중증장애인들이 포함되기 힘들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음. 그러나 ‘개방노동시장’ 영역 바깥에서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 적합한 노동 영역

에 대한 대안 없이 과연 중증장애인에게도 통합적인 노동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을 것인지 의문임.

3. “최저임금법에서 배제된 장애인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것”(보충급여제)이란 <최종 견해>의 문구는 보호작업장 축소 및 통합노동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향과 모순될 수 있음.

: 물론 ‘보충 급여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을 지금보다 나은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안인 게 사실임. 그러나 이를 통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보호작업장 운영 주체 포함)가 될 수밖에 없음.

: 보충급여제는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능력 평가를 계속 전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보충급여제가 시행되더라도 장애인 노동자가 그 자체로 모멸감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작업 능력 평가’를 앞으로도 계속 감내해야 함.

: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해 주는 만큼, 직업재활시설이건 아니건 더 많은 사용자가 이 법을 악용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을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임. 즉 보충급여제 시행은 도리어 보호작업장의 존속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며, 보호작업장이 추후에도 지속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4.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개방노동시장으로의 이전’은 일부 장애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일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직업재활 정책의 한계를 답습할 뿐임.

: 한국에서 ‘직업재활’을 바탕으로 하는 장애인 노동정책은 이미 30년 넘게 장애인 노동정책의 근간을 차지해 옴. 그러나 여전히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장애인은 37% 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는 20-21%에 불과함.

: 개방노동시장이 결국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일자리밖에 마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이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 확대 및 일자리 확대는 요원해 보이는 게 현실임.

- 결론적으로, 22년 <최종견해>는 분명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긍정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논평 8>에서 배제하고자 한 ‘능력주의’를 넘어서고, 모든 장애인에 대한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UN CRPD> 제27조의 정신에 맞게 장

애인 노동 정책을 구상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여전히 ‘장애인 노동 정책 = 직업재활정책’이라는 등식화를 넘어서지 못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며, 한편으로는 현재 한국의 장애인 노동 문제 현황에 대하여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임.

- 따라서 이러한 <최종견해>의 한계를 넘어서고, <UN CRPD>의 기본정신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동과 관련된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3. UN CRPD 정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최저임금적용제외 및 임금차별

- 장애인노동자 임금차별 및 노동능력에 따른 임금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노동에서 지적하는 ‘능력주의’적 관점을 넘어서야 하며,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함.

: 장애인의 ‘임금’을 ‘동일 가치 생산’의 척도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및 ‘노동력 재생산권’이라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

: 단순히 ‘보충급여제’를 도입한다거나,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음.

: 그러지 않는다면, 앞서 지적한 이유로 보호작업장은 지속적으로 정당화 될 것이고, 그 자체로 차별적인 ‘노동능력’ 평가 기준(작업능력평가)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 아울러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는 장애인 노동자일지라도 장애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따라 현재의 저임금 구조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큼.

* 현황: 지난 4월 20일,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가 발의되었으나, 통과 가능성은 낮은 상태

2) 보호작업장,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 의무고용제도 개혁 및 ‘보호, 직업재활 패러다임을 넘어선 장애인 일자리’ 마련

- 22년 최종견해는 “장애인 노동자들을 보호작업장에서 개방 노동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옮기려는 명확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지만, 장애인 노동자들을 개방 노동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옮기는 계획과 함께, ‘개방노동시장’ 바깥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구성하여 옮기는 방안도 적극 확대해야 함.

: 장애인 노동자들을 개방 노동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이전하고, 장애여성의 고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최종견해>에 직접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현재 최저임금의 60%-100%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즉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을 체감할 수 없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각 기업들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인상, 차등적용하고, 장애여성 할당제, 중증장애인 별도의 할당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함.

: 한편 보호작업장을 포함하는 직업재활시설의 노동(대부분 단순 제조업) 자체가 중증장애인의 ‘다른 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에 장애인 당사자 상당수가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힘들. 따라서 ‘개방 노동 시장으로의 점진적 이전’ 정책이 실시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능력주의’ 원칙 하에서 직업재활시설 노동자 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장애인만을 고용하려 할 것임. 생산성이 낮은 이들, 특히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이는 ‘시혜적 고용’이 될 가능성이 크고(기껏해야 의무고용률 충족이나 고용장려금, 고용부담금 관련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고용할 가능성이 크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저임금을 정당화할 수 있음.

: 실제로 ‘보호작업장 노동자의 개방노동시장으로의 이전’은 여전히 보호작업장 노동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근거로 자주 가로막히고 있으며, 적어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따라서 개방노동시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형태의, 시장의 척도에서 계산되는 ‘가치’ 개념을 넘어선 ‘공공적, 사회적 가치’ 생산 일자리를 공공 차원에서 확대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보호작업장 장애인 노동자들을 차차 이 일자리들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최저임금 미지급 보호작업장에 대한 각종 규제가 필요: 현재는 보호작업장 내 최저임금 미지급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생산성이 높은 데도 최저임금을 미지급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업장들이 있음. 아울러 최저임금 미지급에도 고용장려금을 받아 노동자 처우개선 외의 목적으로 그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혜택이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축소할 것을 권고하는 보호작업장을 지속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고용장려금, 근로지원인 제공 기준을 바꿔 보호작업장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UN CRPD> 캠페인 일자리 확대 및 안정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 22년 <최종견해>는 “탈시설 과정에 있는 장애인에게 통합적 노동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음. 아울러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특화된 적극적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하고 있음
- 덧붙여 <최종견해>는 “사회와 언론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한 장애인 권리의 인식제고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함을 지적하고, “a)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편견에 대항하는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 결과를 모니터링할 것. (b)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능력 및 기여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책입안자, 사법부, 법 집행관, 언론, 정치인, 교육자, 장애인과 함께 혹은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인식제고 모듈을 모든 교육 수준에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장애인의 참여를 통해, 도입할 것을 권고함.

- 2020년 서울시에서부터 시행되어 지금은 전국 수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탈시설 과정에 있는 장애인’들, 그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며, 이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특화된 적극적 조치’로 보기에 충분함. 아울러 이 일자리는 최종견해에 포함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 차원,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인식 제고’를 ‘장애인의 참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안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음.

: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홍보하고 실질화하는 역할, 즉 ‘권리 생산 노동’을 수행하며, 세부 직무로는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활동, 장애인식개선 강사 활동 등이 포함됨.

: 이 일자리 노동자들 절대다수는 개방 노동 시장에서 생산성이 낮다고 평가되며, 직업재활 과정에서도 배제가 되어 온 사람들임.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장애인들의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이기에, 대부분 그 직무가 단순노동에 제한되어 있는 기존의 직업재활 과정이나, 기존의 공공일자리보다 참여자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음.

: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장애인 권리 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이 사회에서 살아오는 동안 겪은 경험들과 장애인 차별에 대한 민감성 등은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기에, 이 일자리에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일자리는 현재 지자체 공공일자리로서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UN CRPD> 정신에 따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는데,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서울시와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이 일자리에 대한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이 일자리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 이 일자리가 향후 얼마나 더 확대될 것이며, 안정화될 것인지가 22년 <최종견해> 및 <UN CRPD> 정신 실현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정책토론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통해 본
국내장애인 권리 이행방안 살펴보기

토론 4

〈제16조 착취 및 학대, 제26조 가할 및 재활,
제28조 적절한 생활 및 사회적 보호〉

**대한민국! 차별+학대+가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것만은 지키자!**

박찬동 관장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학대+가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것만은 지키자!

제16조 다른 사람에게 폭력,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제26조 교육, 복지, 건강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제28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나라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발표 :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찬동

이런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알기 쉬운) 최종 견해 : 2022년 1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
- CRPD (제2-3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 CRPD (제2-3차) 정부보고서
- 비마이너 : 저항하고 싸우는 이들을 기록하는 진보적 장애인언론



국가인권위원회



[제16조] 착취 및 학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 ✓ 폭력, 학대로부터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조치
- ✓ 폭력,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
- ✓ 폭력,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기관의 설치와 효과적 감시 보장
- ✓ 보호서비스의 제공과 피해회복 및 재통합을 위한 지원
- ✓ 정책, 특히 피해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입법과 정책을 마련

[제16조] 착취 및 학대

* 정부보고서의 대부분을 차지

❖ 출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신고접수 : 2018년 3,658건 ➔ 2021년 4,957건. **136% 증가**
- ✓ 지역옹호기관은 2017년 17개소에서 현재 **19개소로 증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한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사후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 ✓ 학대 방지 위한 독립(전담)기관 역할 기대하기 어려워...
 - * 서울(변호사 포함)-17명, 광주-6명, 부산-3명 등 지역 편차 커
- ✓ 장애인 지원하는 시설+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 **감시 어려워...**
- ❖ 학대 피해여성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쉼터, 지원 부족해...
 - ✓ 피해장애인쉼터는 **19개소**,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5개 지역 **10개소**

[제16조] 착취 및 학대

중요부위 일회용 비닐로 묶어...치매 50대 장애인 학대한 요양원

뉴스데스크  손은민

"장애인 학대 시설 폐쇄하라"..무기한 천막농성

지적장애 여성 8년 간 노래방 도우미
시키고 장애수당까지 가로챈 부부

입력 2023-06-03 20:12 | 수정 2023-06-03 21:36

[단독]장애인 여성 따귀 때리고 가방 훔친 50대남, 경찰 체포

출처 : 시사저널 2022. 10. 18 자료제공 : 국회 최혜영 의원실.

- ✓ 장애인시설 학대 5년간 220건...시설 보조금 환수율 0.04%
- ✓ 장애인학대 발생한 160개 시설 중 행정처분 유형
 - 개선명령(93곳), 시설장 교체(12곳), 시설폐쇄(12곳) 등

출처 : 법률신문 2017. 06. 09

- ✓ "장애인 학대사건, 가해자 처벌 수위 너무 낮다."
 -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연구결과 발표회' 에서

[제16조] 착취 및 학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알기 쉬운) 최종 견해 - 국가인권위원회

- ❖ 장애인에 대한 폭력, 학대가 무엇이고 왜 하면 안 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폭력,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를 막기 위한 연구, 조사계획을
세워주세요. 폭력, 학대를 당한 장애 여성을 지원하는 센터와
보호받고 설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주세요.
- ❖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복지기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해주세요. 학대를 당한 장애인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지원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제16조] 착취 및 학대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폭력,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것만은 지키자!

- ❖ **빨리! 아동복지시설 내 장애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자.**
 - 장애아동에게 폭력, 학대에 대한 정보 제공+예방을 위한 교육 필요
 -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필요
- ❖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아동. 더 이상 시설에서 시설로 전전하지 않도록 피해아동쉼터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자!**
 - 출처: *Ablenews* 엔이블뉴스. 학대피해 장애아동, 갈 곳 없어 원가정 또는 시설로...
 - 출처: **인천일보**. 남녀 구분 없는 '피해 장애인 쉼터'...돌봄 손길도 부족

[제16조] 착취 및 학대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폭력,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것만은 지키자!

- ❖ **지자체가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인력에 대해 인권과 학대예방 교육 실시하자!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하자!**
 -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장애인 평생 관련 강사, 주간활동+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인력 등
 -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등 지원인력까지... **성범죄 경력 조회와**
 -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지원인력도... **인권 + 학대예방 교육 의무**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에 <공개>하도록...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인식개선 의무교육 실시 3년 맞아 모니터링 결과 발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조차도 참여율 저조 · 형식적 운영

[제16조] 착취 및 학대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폭력,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것만은 지키자

- ✓ 2023년 4월 20일,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발의 (여야 국회의원 51명 공동 발의)
- ✓ <장애인 인신매매 죄> 신설. 노동착취나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범죄에 대응
- ✓ <고발인 이의신청권> 을 복원
- ✓ 피해장애인 보호명령제도 (행위자에 대한 접근 제한, 격리 등)
-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경과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한정했다고 ...
 - 현장에서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더 필요한데 ...

[제26조] 훈련 및 재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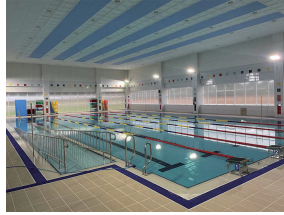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알기 쉬운) 최종 견해 - 국기인권위원회

- ❖ “장애인이란 누구나 교육, 복지, 건강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 ❖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가 있는 외국인에게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 ❖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가 있는 외국인도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26조] 훈련 및 재활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폭력,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것만은 지키자!



광주드림 2023. 02. 28

- ✓ 북구반다비체육센터
- ✓ 수영장 운영시간 관련 장애인 고려 못해...

- 수영장은 장애인에게 치료는 물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통합하는 공간. 적절한 훈련과 재활 프로그램, 보조기기와 편의시설 제공해야...

[제26조] 훈련 및 재활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폭력,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것만은 지키자!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종합적인 훈련,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해야...

- ✓ 수요 늘어나지만 공공부문 지원 미흡한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 ✓ 시각장애인에게는 흰지팡이만?
보조기기. 언제까지 하드웨어만 지원해...
- ✓ 취업 장애인만 운전하라고? . . . 정부 차량 지원 확대 필요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알기 쉬운) 최종 견해 - 국가인권위원회

-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나라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장애인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장애인 **단체와 상의**해 주세요.
- ❖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주세요.
- ❖ 장애가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장애인과 **똑같이 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 지적장애 남성. 국민기초수급자
- ✓ 노숙하다가 감금 후 전세 계약서 작성
- ✓ 2억7천만원 재산 확인되어, 수급 탈락
- ✓ 생계급여+주거급여 중단
- ✓ 관절염 치료 중단
- ✓ 영구임대아파트 쫓겨날 수도...

-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나라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 ❖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인데... 범죄의 피해자인데...
 - 소득재산조사 시 장애의 특성 고려 +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실효 높이기
 - 부동산 신고거래 시 조사 철저 / 피해채취약계층구제를 위한 법률 개정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없다**.
2.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다**.
3. 「장애인복지법」 상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4.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은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다**.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폭력,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것만은 지키자!

- ✓ 장애를 가진 이주민은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 ✓ 한국의 법과 제도는 사회보장의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장애 이주민이라도 일괄해서 <외국인>으로만 보기 때문에 장애 이주민은 생계에 대한 아무런 공적 지원 없이,
- ✓ 적절한 교육과 재활치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정책토론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통해 본 국내장애인 권리 이행방안 살펴보기

인 쇄 | 2023년 6월 23일

발 행 | 2023년 6월 23일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사)광주장애인권센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